
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8863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5.

제안자 : 국토교통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명	의안번호	발의자	회부일	회의정보	
				상정	회의정보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	2217670	북기왕의원 등 15인	'26.3.23.	상정	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('26.4.1.)
				소위 심사	제434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('26.4.22.)
					제434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('26.4.28.)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	2217680	문진석의원 등 15인	'26.3.24.	소위 심사	제434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('26.4.22.)
					제434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('26.4.28.)

제434회 국회(임시회) 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(2026. 4. 30.)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「국회법」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거 전체 부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용산기지 임시 개방은 법적 근거 미비를 비롯해, 해당 부지의 환경 오염 정화 및 위해성 저감 조치가 미흡하여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

지속적으로 제기되어, 과거와 차별화되고 책임 있는 접근을 통해 용산공원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시급함.

이에 용산공원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고, 이를 통해 국민들이 용산공원의 조성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(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제1호).

특히 반환부지의 유지·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 관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, 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여 과거의 환경 부실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의2).

나아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서는 획일적인 공원·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과거와 같은 단순한 외형적 개방 대신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, 청년층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5조의2 신설).
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조성계획(이하 “용산공원조성계획”이라 한다)을”을 “조성계획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용산공원조성계획”을 “용산공원조성계획(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 1호 중 “용산공원조성지구”를 “용산공원조성지구(제1항 단서에 따라 지구 일부에 대하여 용산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부지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로 한다.

다만, 용산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산공원 조성지구의 일부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효율적으로 유지·관리”를 “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·관리(환경관리를 포함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반환부지의 유지·관리 및 운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복합시설조성지구에 대한 특례)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 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)</p> <p>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·고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립·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<u>조성계획</u> (이하 “<u>용산공원조성계획</u>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<u>용산공원 조성계획</u>을 수립할 때에 용산공원시설 중 지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용산공원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	<p>제14조(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조성계획</u> 을----- ----- -----<u>다만, 용산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일부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----- <u>용산공원 조성계획(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/p>

대한 특례) 국토교통부장관은
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의
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
경우에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
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도
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
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
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.